##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04 제출연월일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계설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제5호 중 "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"을 "미달하게 된"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	제22조(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지사는 기계설비성능	②
점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	
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	
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	
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	
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5호까지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	
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	5
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<u>미달한</u>	<u>미달하</u>
<u>날부터 1개월이 지난</u> 경우	게 된
<단서 신설>	<u>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</u>
	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
	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
	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경우는 예외로 한다.
6. · 7. (생략)	6. • 7. (현행과 같음)